#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4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이달희·고동진·박준태

주호영 · 신동욱 · 서범수

김상훈 · 김석기 · 유용원

김정재 · 서천호 · 김예지

인요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제1호의"를 "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 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납세의무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제17조제5항제1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8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
	<u></u> 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
	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u>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u>
	<u>가.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u>
	거나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
	<u>니하는 경우</u>
	<u>나. 납세의무자가 2025년 1월</u>

-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 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 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 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에 한정한다.
- ③ ~ ⑤ (생 략)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생 략)
  -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 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
<u>3.</u> 제1호 및 제2호의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5)
<b>o</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 2. (생략)

,
1
<u> </u>
2. (현행과 같음)